

의안번호	제489호
의결 연월일	2013년 5월 15일 (제320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3년 5월 15일

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: 2013년 5월 15일  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를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산업경제위원회” 직무와 소관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함  
(안 제3조제2항제4호나목)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
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### 4. 산업경제위원회

가.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

나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

다.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

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4. 산업경제위원회

- 가.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
- 나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
- 다.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마.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산업경제위원회</u></p> <p>가. <u>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<u>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다. 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산업경제위원회</u></p> <p>가. <u>경제통상국, 농정국, 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나. <u>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>다. <u>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마. <u>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